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1일, 유용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4.23.)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용원 의원)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에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은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장려금의 수혜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 부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개정안은 병 출신으로써 단기복무장교 전형에 합격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교 지원을 제고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부사관후보생과정 학생 및 단기복무부사관에게까지 확대하며, 가산복무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단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가산복무지원금과 단기복무장려금의 중복 지급과 관련하여, 양 제도의 목적과 취지, 재정여건, 인력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5호의 단기복무부사관의 범주에 제2호의 학생 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 포함되므로 중복하여 입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 지원자 및 부사관에게까지 확대하고, 가산복무지원금과 단기복무장려금은 현행대로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